



고용노동부

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시달

1. 관련: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72호, '23.7.14)
2. 위 관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'숙식비지침 개선방안'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「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\*」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.

\* 종전 명칭은 「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」이었으나, 주거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며,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기존 숙식비 지침은 폐지됨

3. 각 지방관서는 동 가이드라인 시행일('23.11.27.) 전까지 권익보호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방관서별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시고, 향후 고용허가 신청·발급, 사업장변경자 알선 등과 연계하여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,

- 아울러, 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 현지 취업교육, 사업주 대상 컨설팅 등에 동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, 업종별 대행기관은 회원사에 동 가이드라인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1부. 끝.

## 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

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고객상담센터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고용센터장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한국고용정보원장, 중소기업중앙회장, 대한건설협회장, 농협중앙회장, 수협중앙회장

행정사무관 이상영

외국인력담당관 이상임

국제협력전결 10/27  
관 김은철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담당관-3840 (2023-10-27) 접수 외국인력지원실-1226 (2023-10-27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,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 044-202-7148 전송 044-202-8027 / leel172799@korea.kr / 비공개